

# 하도급법 주요 실무가이드

현장 포켓북



## 용어의 정리

- ✓ 원사업자 : SK에코플랜트
- ✓ 수급사업자(Biz. Partner) : 원사업자로부터 건설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 ✓ 하도급 계약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제조, 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고 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 목 차

|                              |    |                            |    |
|------------------------------|----|----------------------------|----|
| 1. 작업 전 서면교부의무 .....         | 4  | 6. 선급금 수령시 15일내 지급의무 ..... | 22 |
| 2. 부당 특약금지 .....             | 8  | 7. 60일내 대금지급의무 .....       | 30 |
| 3. 지급보증의무 .....              | 12 | 8. 감액금지 .....              | 38 |
| 4. 계약조정 통지 및 변경계약 체결의무 ..... | 14 | 9. 부당 위탁취소금지 .....         | 40 |
| 5. 납품단가 조정 협의의무 .....        | 18 | 10.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 44 |



## 작업 전 서면교부의무(제3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Biz. Partner)는 하도급법상의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추가(변경)계약서, 작업지시서 등 명칭불문]을 사전[수급사업자의 작업 착수 전]에 교부(제공)하여야 한다.

### ※ 필수 기재사항

- ① 목적물 ②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제공 및 대가 지급내용
- ⑥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⑦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과징금 or 시정명령 (벌점 1점) 이상



## Do & Don'ts Guideline

- 작업 지시서 등 서면발급시 필수 기재사항 7가지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확정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하였다가 모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서 발급이 필요하나 서면 기재사항이 미확정인 경우에는

- i) 미확정 사유 및 확정 예정기일을 기재한 작업지시서를 발급해야 하고,
- ii) 미확정 사유가 향후 확정되는 때 작업지시서를 재발급해야 함



### 1 불완전 서면 발급

원사업자는 공사 착수 전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필수기재 사항(4page 참조)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발급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정당한 사유)와 정할 수 있는 예정기일 서면 기재必

#### 1 불완전 서면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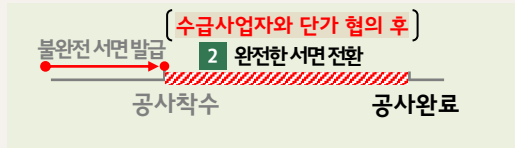


- [예시] 작업 당일 공사물량 특정 및 수급사업자(BP) 견적접수 불가로 공사내역 및 금액을 제외한 당일 내 불완전한 서면 발급



### 2 완전 서면 발급

원사업자는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 한 경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그 사항을 적은 보완 서면(완전한 서면) 발급



- [예시] 공사물량 특정(공사완료 또는 예측가능) 후 지체 없이 공사내역 및 금액 기재 후 완전한 서면 발급으로 전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sub>(BP)</sub>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시정명령 (벌점 1점) 이상

#### 부당특약 예시

- ① 물가변동, 자재비, 임금인상, 돌관작업, 추가공사, 설계변경, 경미한 공사 등에 따른 금액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②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건설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리, 검수, 검사 및 품질관리비, 민원, 분쟁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 부당특약 예시

- ③ 하자담보책임을 법에서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가중, 책임소재 및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하는 경우
- ④ 표준계약서나 법령에 비하여 과하게 높은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 ⑤ 태풍, 홍수, 지진, 기타 악천후 등 천재지변 또는 전쟁, 사변, 화재, 전염병, 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로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 Do &amp; Don'ts Guideline

현장설명서, 특별계약서는 공정거래팀의 사전검토를 받았다.



입찰내역서 현장설명회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포함하지 않은 사항을  
수급사업자(BP)에게 요구하거나, 발생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BP)의 권리를 제한하였다.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조건을  
설명하였다.





## Do & Don'ts Guideline

“일체의”, “모든”, “전적으로”, “제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부당특약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사업자<sub>(BP)</sub>에게 해당조항에 대한 무효를 공문으로 통지하여 수급사업자<sub>(BP)</sub>로부터 회신공문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 지급보증 의무 (제13조의2)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sub>(BP)</sub>에게 하도급계약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벌점 1점) 이상

※ 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되는 3가지 경우

1.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
2. 원사업자의 회사채 신용평가 A 이상의 등급 ('23.12 현재 SKEP A-, '24년부터 본 면제조건 삭제)
3. 발주자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sub>(BP)</sub>에게 직접 지급



## Do & Don'ts Guideline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사업자<sub>(BP)</sub>에게 보증서 발급 및 교부하였다.



하도급 계약 목적물과 금액, 준공일자 등 내용이 일치한다.





①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감)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감)액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시기 및 경제상황 변동을 이유(위 1호)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4-2)



### 계약조정 통지 및 변경계약 체결의무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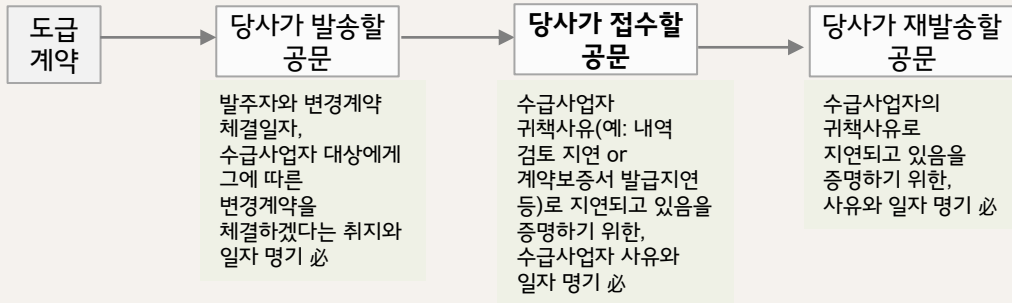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감)액 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sub>(BP)</sub>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sub>(BP)</sub>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벌점1점) 이상

## 실무 가이드라인

① 수급사업자<sub>(BP)</sub>에게 통지 후, 지급액 협의가 지연될 경우 절차적 소명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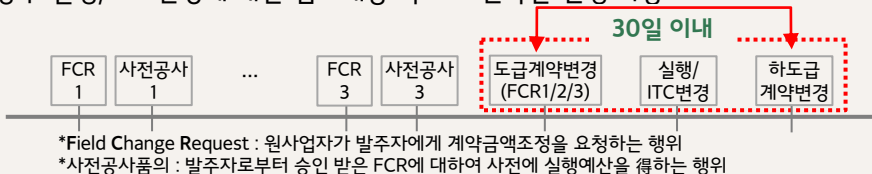




## 실무 가이드라인

### ② 사전공사를 통한 신속한 실행/ITC 변경 품의 진행

- 대부분의 발주자는 도급계약변경을 연말에 통합적으로 진행
- FCR 승인 시 마다 사전공사 품의를 진행한다면,
  - i) 도급계약 변경 이전 하도급계약변경 가능
  - ii) 향후 실행/ITC 변경에 대한 검토내용 축소로 신속한 진행 가능



# 5



## 납품단가조정 협의 의무 (제16조의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BP)가 원재료 등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경우, **1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한 관련 증빙 서면(메일, 공문 등)을 남기고,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는다.

※ ‘협의개시’란, 구체적 일자 여러 개를 제안하여 협의, 회의를 arrange하거나 곧바로 구체적 단가 조정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견, 확인, 이견을 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정명령 (벌점 1점) 이상

## Do & Don'ts Guideline

- 수급사업자(BP)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이 들어온 경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BP)와 협의를 개시하기만 하면 되고,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조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기만 하면 됨.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시정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 현장설명서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여 미리 설정해 놓은 경우,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된다.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 제한 조항은 하도급법 상 부당특약으로 별도 제재를 받게 됨



## Do & Don'ts Guideline

수급사업자<sub>(BP)</sub>가 대금조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였다.



협의개시 서면(회의록, 메일 등)을 남겼다.



하도급대금 조정요청 접수 리스트를 PJT별로 관리하고 있다.





## 6<sub>-1)</sub>



### 선급금 수령시 15일내 지급의무 (제6조)

수급사업자<sub>(BP)</sub>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sub>(BP)</sub>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 6<sub>-2)</sub>



## 선급금 수령시 15일내 지급의무 (제6조)

- ① 선급금을 받은 날 또는
- ②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BP)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지급의무 예외사유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 연 15.5%포함,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벌점 1점) 이상



## Do & Don'ts Guideline

▪ 수급사업자<sub>(BP)</sub>와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선금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한 계약 내용은 부당특약에 해당. 선금금 지급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미지급 합의를 했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sub>(BP)</sub>에게 선금금을 지급해야 함

▪ 수급사업자<sub>(BP)</sub>로부터 선금금 보증서 미수령시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sub>(BP)</sub>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를 참작사유로 규정. 원사업자는 선금금의 지급의사를 증빙하는 서면 및 수급사업자<sub>(BP)</sub>의 미수령, 미응대에 대한 증빙 확보



## Do & Don'ts Guideline

▪ 수급사업자<sub>(BP)</sub>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이유로 선금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수령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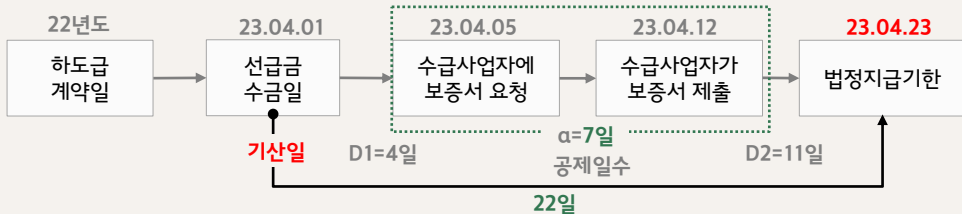


→ 수급사업자<sub>(BP)</sub>가 선금금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포기각서 등 공문 확보 필요

## 💡 실무 가이드라인

### ① 선급금을 받은 경우 기산일

- 수급사업자<sub>(BP)</sub>에게 보증서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sub>(BP)</sub>의 처리기간은 지급기한에서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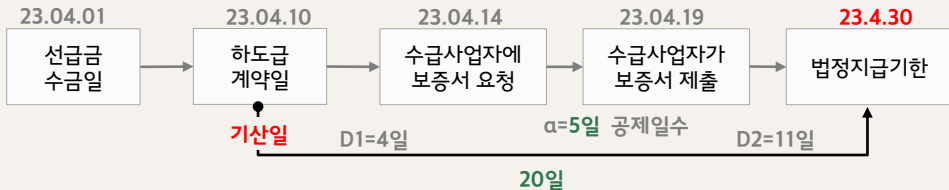
$$\text{법정지급기한: } 4.11 + 15\text{일} + a(7\text{일}) = 4.23$$



## 실무 가이드라인

②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 기산일

- 수급사업자<sub>(BP)</sub>에게 보증서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sub>(BP)</sub>의 처리기간은 지급기한에서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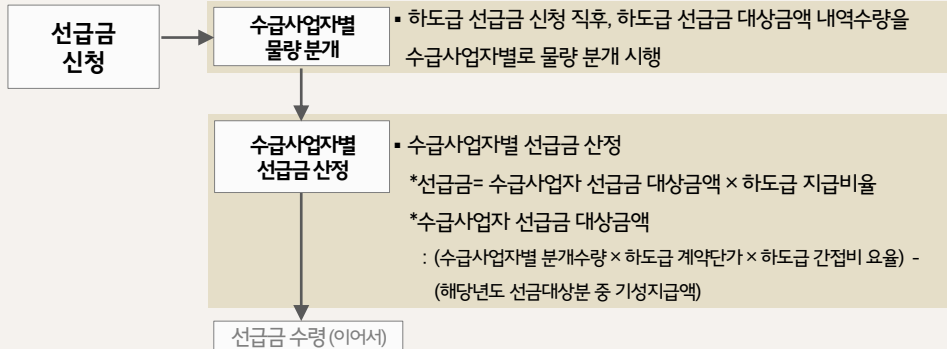
$$\text{법정지급기한: } 4.10 + 15\text{일} + \alpha(5\text{일}) = 4.30$$

- ✓ 수급사업자에서 선급금 포기時, 관련 공문 반드시 확보



## 실무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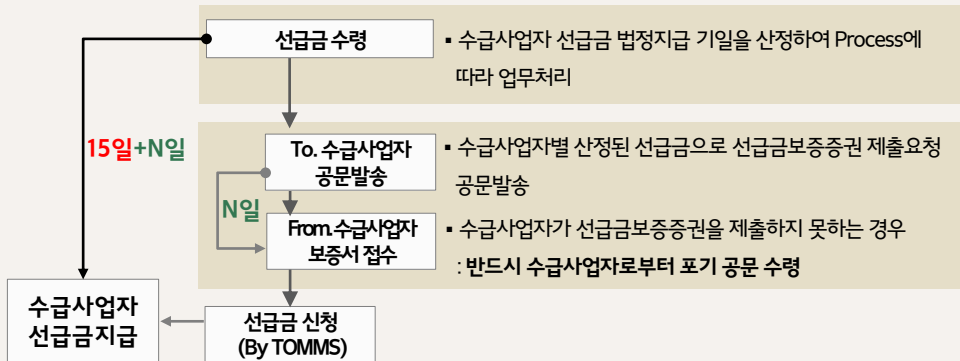
### ③ 선급금 지급 업무처리 Process



## 6. 선급금 수령시 15일내 지급의무



### 실무 가이드라인





## 60일내 대금지급 의무 (제13조)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지 않는다.
-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연15.5%를 지급한다.



지연이자 연 15.5%포함,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벌점 1점) 이상



## Do & Don'ts Guideline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sub>(BP)</sub>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sub>(BP)</sub>의 하도급채권이 가압류 되었을 경우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sub>(BP)</sub> 하도급채권이 가압류 되었더라도 기한(60일) 내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법 위반이므로, 하도급대금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지급을 하여야 한다.



## Do & Don'ts Guideline

- 수급사업자(BP)와 정산 합의가 지연된다면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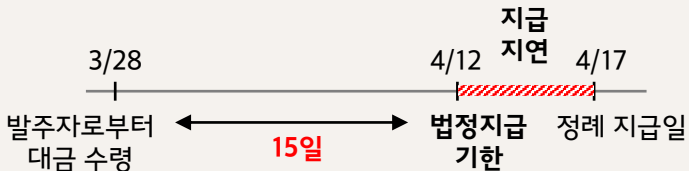
→ 정산합의/변경계약의 지연 등으로 대금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 위반.  
계약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명확한 금액은 수급사업자에게 공문 발송 후 지급 또는  
공탁 처리 후, 이견이 있는 금액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함



## 실무 가이드라인

### 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 지급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 집행부서에 업무연락(지급일 변경)을 하여 미지급, 지연 예방





## 실무 가이드라인

### ② 지연 지급 발생 시 **지연이자를 지급**(자진시정)

- 지연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산출

예시) 하도급대금 1,000백만원 / 초과일수 5일

지연이자=1,000백만원×15.5%×5일÷365일=2.1백만원

- 품의 진행 후 지급

- 지연이자는 기성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

→ 추후 공정위에 자진시정 입증 용이

\*지연이자는 부가세 없음, 지급수수료 등 경비 계정으로 지급

지급  
지연  
발생!

**별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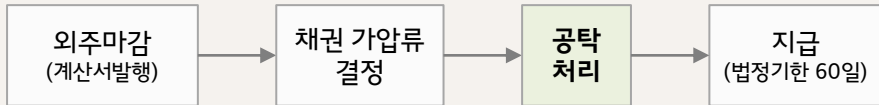
대금 지급

지연이자 지급

- ✓지연이자 산출
- ✓지급 품의 진행



### ③ 하도급대금에 채권(가)압류가 결정된 경우 i) **법정기한(60일) 내 공탁처리**





### ③ 하도급대금에 채권(가)압류가 결정된 경우 ii) 행정 처리

#### 1. 수급사업자<sub>(BP)</sub>에 채권(가)압류 결정 알림 및 공탁처리 예고 통지 공문발송 (법원 결정문 사본 첨부)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사건번호 2023카단 ○○ 채권 가압류[이하 “본 사건”]와 관련입니다.
- 3) 당사가 귀사에 ○○년○○월○○일에 지급예정인 하도급대금(○○년○○월분) ○○○,○○○원(VAT포함)  
중 ○○○,○○○원은 “본 사건” 으로 귀사에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 4) 이에, 당사는 “본 사건” 결정 금원에 대하여 공탁 처리를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 가이드라인

③ 하도급대금에 채권(가)압류가 결정된 경우 ii) 행정 처리<sub>(이어서)</sub>

2. QG품의

3. 공탁처리

4. 수급사업자(BP)에 공탁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통지 즉, 공문발송 (금전공탁서 사본 첨부)

## 감액금지(제11조)

원사업자는 사전에 감액지급 기준을 적은 서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액지급 기준을 적은 서면이란 아래 4가지 사항을 기재하고 양사 날인한 서면으로 작업개시 전 수급사업자(BP)에게 교부되어야 함

① 감액의 기준, ② 목적물 등의 물량, ③ 금액, ④ 공제 등 감액방법



과징금 or 시정명령 (벌점 1점) 이상



## Do & Don'ts Guideline

감액지급에 대한 사전계약(서면, 기준)이 있어서 그 서면에 따라 감액을 하였다.



사전 감액 지급 합의없이 계약서상 하도급대금보다 낮게 지급이 되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sub>(BP)</sub>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또는 계약을 취소, 변경하거나 목적물 인수, 검수요청에 대한 인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과징금 or 시정명령 (벌점 1점) 이상



\*수급사업자(BP) 귀책사유

- ① 파산 및 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 발생으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 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 능력이 없는 경우
- ③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위탁을 거부하며, 납품 등의 시기에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Do & Don'ts Guideline

타절(계약 해제, 해지) 또는 감액(일부취소)시, 계약서 등 서면상 근거와 기준에 따라 수급사업자<sub>(BP)</sub>의 귀책사유를 확인하고 증빙을 확보하였다.





## 실무 가이드라인

- ① 수급사업자<sub>(BP)</sub>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취소 금지
- ② 수급사업자<sub>(BP)</sub> 귀책사유가 확보되어 해제 • 해지의 절차진행시, 기성고에 대한 정산 필수
- ③ 기성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 공탁
- ④ 계약 해제 • 해지에 대한 사전예고, 최고통보(최소 1회 이상) 필수
- ⑤ 계약 해제 •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 판단은 제3자 검토, 즉 법무 or 공정거래팀 사전검토 得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BP)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8가지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BP)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지연이자 연 15.5%포함,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벌점 1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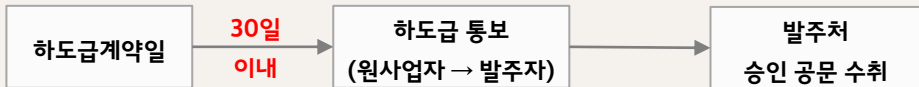


## 실무 가이드라인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sup>①</sup>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sup>②</sup>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① ‘정당한 사유’란

-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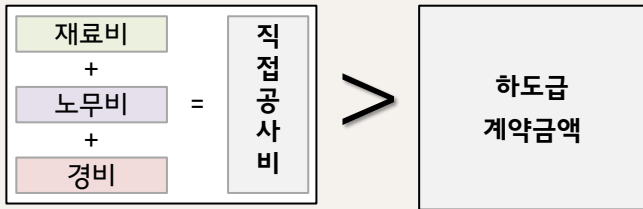
- 수의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고 반드시 하도급 통보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공문을 받아야 함



## 실무 가이드라인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sup>①</sup>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sup>②</sup>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란



발행인 Compliance팀